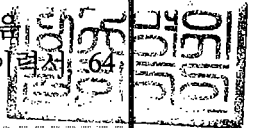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최 석 민	일본명	
	한 자	崔 錫 敏	이 명	
출 생 연월일	1858년 8월 6일		사 망 연월일	1915년 12월 20일
분 지	京城府 北部 泥洞 [1914년 주소]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858. 8. 6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5쪽)		
	1894.	의정부 주사, 내각 주사 (같은 자료)		
	1895.윤5.3~1896. 8. 4	평양부 참서관 (같은 자료)		
	1898. 8.16	통진 군수 (같은 자료)		
	1899. 6.17~1899. 7.15	법부 참서관 법부 대신 '趙秉式 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됨 (같은 자료; 조선귀족열전, 190쪽)		
	1904년 ~ 1945년			
	1904. 3.22~1904. 6. 4	홍원 군수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5쪽)		
	1904. 9.21	시흥 군수 (같은 자료)		
	1904.12. 6	官制釐正委員 (같은 자료)		
	1905. 3. 7~1905. 7.13	법부 민사국장 (같은 자료)		
1905. 7.11	내부 경무국장 (같은 자료)			



1905.12.19	내부 지방국장 (같은 자료)
1906. 4. 7	지방조사위원 (같은 자료)
1906. 4.25	내부 治道局長 (고종실록, 1906년 4월 25일)
1906. 7. 7~1906.11.27	내부 협판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5쪽)
1906.11.27	지방세조사위원 (같은 자료)
1907. 1. 2~1907. 3.20	중추원 찬의 (같은 자료)
1907. 5.30~1907. 8. 2	경기관찰사 (같은 자료)
1907. 6. 3	경기도 관찰사 겸임 경기재판소 판사 (황성신문, 1907년 6월 6일)
1907. 8. 2	經理院卿 (같은 자료)
1907.11.26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3등 태극장을 받음 (황성신문, 1907년 11월 28일; 조선귀족이력서 64쪽[1907년 8월 26일 받음])
1907.11.30	內藏院卿 (순종실록, 1907년 11월 30일)
1908. 9.16	내장원경 겸임 帝室債務審査會 委員 (황성신문, 1908년 10월 16일; 조선신사보감 귀족부[1914], 64쪽)
1909. 4. 9	궁내부 銓衡委員 (황성신문, 1909년 4월 13일)
1909. 7.26	일본 정부로부터 日本國皇太子渡韓記念章을 받음 (황성신문, 1909년 8월 1일)
1910.10. 7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7, 8, 9, 11일, 1911년 2월 23일)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 수령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齋藤實文書 100.6]; 朝鮮貴族略歷[齋藤實文書100.4];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3년 5월 23일 부록)
1911. 8.24	조선귀족회 간사 (매일신보, 1911년 4월 28일)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종5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1915.12.20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월 19일; 매일신보, 1915년 12월 23일)

조사내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남작 수작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男爵 崔錫敏”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者氏名」.

“授爵者가 左와 如하더라. (중략) △ 男爵의 部 (중략) 崔錫敏 (후략)”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國分 인사국장, 桑原 비서관, 藤波 통역관, 陶山 통역관이 열석한 후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봉수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

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여한 자의 씨명은 좌와 같더라. (중략) 동[남작 - 작성자] 최석민 (후략) ”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8일, 9일, 11일, 1911년 2월 23일; 『續陰晴史』 권14(庚戌[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韓民』, 1936년 8월 29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朝鮮貴族令에 의거 일본정부로부터 男爵 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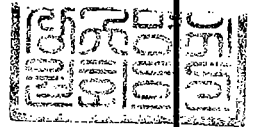
【참고사항】 작위 세습

- 출전: 『매일신보』, 1916년 3월 24일.

“二十日附로 좌와 如히 辭令이 有하였더라 (중략) 故 男爵 崔錫敏 家督相續人 崔正源 襲爵被仰付”

- 출전: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최석민의 상속인 최정원이 남작 작위를 습작함.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여 하사하신 귀족 반족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중략) 오후 1시 30분에 교부받은 자는 42명이니 (중략)

순[남작 - 작성자] 최석민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일본정부로부터 25,000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함.

2) 서훈 및 서위

▶ 일본내각, 『관보』, 1913년 5월 23일 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四十五年勅令第五十六號>에 의거 韓國併合記念章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大正元年十二月七日 敍從五位 男爵 崔錫敏”

【참고사항①】 기타 일본으로부터 받은 훈포상

- 출전: 『황성신문』, 1909년 8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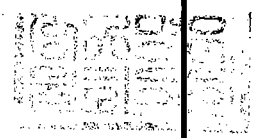
1909년 7월 26일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국 皇太子渡韓記念章을 받음.

【참고사항②】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 출전: 『황성신문』, 1907년 11월 28일.

1907년 11월 26일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勳三等 太極章을 받음.

【참고】 李王職 編, 『조선귀족이력서』, 1913, 64쪽[1907년 8월 26일 받음].



3) 한일합병 1주년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함

▶ 『매일신보』, 1911년 8월 29일.

“일본에 떠오르는 해가 비추이니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면서 계림에 먼저 미치는구나
한 일가로 융합하여 진실로 천심을 잊게 되네
발이랑을 펼침이 예와 같으니 모두가 만족하는구나
동아(東亞)가 응비하니 고금에도 없었네
별의 궤적이 거둬 향해 기리는 마음에 교훈을 주니
수기(繡旗)와 화등(火燈)으로 모두가 노래하네,
천년만년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어라”

- 男爵 崔錫敏”

瞻仰扶桑旭日照臨，
光遍寰瀛先及鷄林，
融爲一家寔維天心，
畝肆如故于々蒼黔，
雄飛東亞無古無今，
星躔重向紀念有箴，
繡旗花燈衆口謳吟，
於千萬年岳高海深。



1. 최석민은 한일합병 직후 1910년 10월 7일, 일본정부로부터 합병에 관한 공로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1915년 12월 21일 사망할 때까지 작위를 유지하였다. 사망 후 작위는 양자인 최정원에게 세습되었다. 이러한 최석민의 수작(受爵) 사실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속한다.

2. 최석민은 1911년 1월 13일, 일본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했다. 이와 함께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같은 해 12월 7일, 종5위에 서위되었다. 또한 최석민은 1911년 8월 29일, 한일합병 1주년을 맞아 기념축시를 매일신보에 게재하여 합병을 정당화하였으며, 일본천황을 찬양하였다. 이와 같은 최석민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조항에 해당한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석민은 일본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의 작위와 함께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했으며, 이후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종5위에 서위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석민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7,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